산업발전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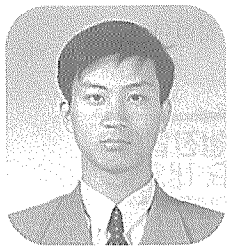

김현대 사무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올해 2월 8일 제정된 산업발전법이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여년간 시행되어 오던 기존의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산업발전법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산업발전법의 제정은 WTO체제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경제위기(1997년 이후) 등으로 크게 변화된 국내외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산업경쟁력 및 경제발전을 좌우하게 되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발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산업발전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

WTO 체제의 출범 등 변화된 세계 경제 여건하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직접적 지원 위주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왔다.

전자공업진흥법 등 개별공업육성법들이 통합되어 86년에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개별 업종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직접적인 지원에서 기능별, 간접적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이행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발전법도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의 촉진에 한계를 노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미약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발전법에서는 경쟁력강화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설비의 신·증설 및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을 제한하였던 바,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발전법에서는 정부주도의 합리화업종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주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업발전법 제정이후 크게 변화된 대내외의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발전법의 제정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기존의 공업발전법과 비교하여 산업발전법에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번 산업발전법에 반영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기업부실이 급증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등장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부실 처리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 스스로 시장기능에 의해 부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실기업의 평가, 매각 등 구조조정 노하우 및 관련 전문가집단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실처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전문적으로 매입·정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제도화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최소화(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하였으며, 국내 구조조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회사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특례(자본금의 10배), 지주회사 특례(부채비율 및 자회사지분률 제한 제외) 적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양질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출자자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회생가능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여 실업을 방지하는 한편, 전문회사가 외국인투자유치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 다른 후발개도국에 앞서 산업화를 시작하고 국제분업구조 변화의 기회를 이용, 주력산업 육성에 성공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주요 수출산업들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성장이 둔화·정체되고 있고 국제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력 장치산업의 경우 범용제품 위주의 대량생산체제로 대외여건변화에 취약하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첨단전자·신소재·메카트로닉스 등 지식기반제조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컴퓨터관련서비스·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현재 발전 초기 단계이나 향후 성장잠재력 및 부가가치창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집약적인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은

정부가 5년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법적 기초하에 향후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일부 주력상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양화하여 대내외 여건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수출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신산업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소비구조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산업발전법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시·도별 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밖 지역의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지방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산업 집중억제를 통한 반사적 효과에 치중했으나, 이같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산업집중 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정부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지방에 입지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창업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발전법에 지역별 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의 수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산업 진흥시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 사업, 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개발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정 과정에서 기업간협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법인·단체가 기업간협력 증개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간 협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산업협력증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산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게 하는 등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과의 민간산업협력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이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과 추진하고 있는 민간산업협력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충함으로써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요약)

■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을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
- 공업발전법하의 합리화업종 지정제도 폐지
-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 신산업 창출촉진 시책 추진
- 5년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의 창출촉진 시책 추진

■ 지역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조정 및 지원시책 수립

■ 기업간협력의 촉진
-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 기술 또는 상표의 공공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 국제산업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 국제산업협력증진시책의 수립·시행
- 외국과의 산업혁력협의체 설치·운영
- 민간의 산업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문과 참고자료(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제도 안내 등)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